

|  |  |
|--|--|
| <p>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 4 조(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제 5 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이며 회무를 총괄한다.<br/>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6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br/>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br/>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 7 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 8 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 <p><b>조례중개정조례안</b></p> <p>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뚝섬체육공원</li> </ol> <p>제3조제1항 중 “체육센터”를 “체육센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p> <p>제6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  |
|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 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  | 안 제3조의 제목 “(재정지원대상)”을 “(재정용자대상)”으로 하고, 동조중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한다.   |
|  | 안 제9조를 제10조로, 안 제8조를 제9조로, 안 제7조를 제8조로, 안 제6조를 제7조로, 안 제5조를 제6조로,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제4조(재정보조대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 한다.  |
|  |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br>2. 재정용자대상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  |
|--|--|
| <p><b>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재정지원에<br/>관한조례안</b></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장비 등의 개선 또는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 함으로써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필한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p> <p>제 3 조(재정용자대상) 재정용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li> <li>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li> </ol> <p>제 4 조(재정보조대상)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li> <li>2. 재정용자대상 중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제 5 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li> <li>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종류</li> <li>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li> <li>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li> <li>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li> </ol>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제출한</p> | <p>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제 6 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타당성</li> <li>2. 신청자금의 적정성</li> <li>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li> </ol> <p>②시장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p> <p>③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 7 조(자금의 보조 또는 용자) ①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용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자기간 및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시기는 분기별로 한다.</li> <li>2. 용자금리: 연 8퍼센트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li> <li>3. 이자계산 및 징수: 대출일로부터 기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li> </ol>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자된 자금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자연재해·재난의 발생·경제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용자된 자금에 대한 용자금리의 감면 또는 용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8 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p> |
|--|--|

## 94 (第16回-第6次)

|  |
|--|
| <p>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p> <p>제 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의 반환명령 등을 받은자가 그 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li> <li>2. 법령 또는 재정지원의 조건 등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li> <li>4. 시장이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5.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검사·확인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li> </ol> <p>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여 시장과 그 직무를 위탁받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p> |
|--|

## 【별지 제1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신청서

|                                 |   |      |             |         |   |   |
|---------------------------------|---|------|-------------|---------|---|---|
| 신청인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                                 | 사업체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
| 사업명칭                            |   |      |             |         |   |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
| 사업목적 및 내용                       |   |      |             |         |   |   |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             |         |   |   |
| 사업비                             | 총사업비  | 원    |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 보조:     | 원 | 원 |
| 자기자본액                           | 원   |      | 자기자본부담액     | 원       |   |   |
| 사업기간                            |   |      |             |         |   |   |
|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금을 보조·용자 신청합니다. |   |      |             |         |   |   |
| 19년 월 일<br>신청인 (인)              |   |      |             |         |   |   |
| 서울특별시장 귀하                       |   |      |             |         |   |   |
| 거래은행                            | 은행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br>2. 보조금·용자금 사용 계획서<br>3. 법인등기부등본<br>4. 주주총회 결의록<br>5. 각서<br>6. 법인인감증명서<br>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             |         |   |   |